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주에게 물류창고 등에 환기·냉방·난방장치
설치·운영 의무 부과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05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업주에게 물류창고 등에 환기 · 냉방 · 난방장치 설치 · 운영 의무 부과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4일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폭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 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폭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폭염·폭한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주에게 물류창고 등에 환기·냉방·난방장치 설치·운영 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물류창고 등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4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사업주는 폭염·혹한 등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④</u>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u>⑤</u> -----제4항-----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설비·물질·에너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과 위험한 장소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¹⁾,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물질·물리력, 작업 또는 업무의 행태나 환경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이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사업주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기준으로 분류, 의무화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사업주에게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토가 이미 진행중이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도 현재 안전보건규칙의 세부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 중인데, 검토 내용에 냉방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은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5